



中華民國國立高雄大學人文社會科學院
與大韓民國慶熙大學文學院
學生交流協議書



中華民國國立高雄大學人文社會科學院與大韓民國慶熙大學文學院，為了促進雙方友好與學術交流，同意交換學生，並承諾忠實履行以下條文：

- 第一條 交換留學生由國立高雄大學人文社會科學院(中華民國)與慶熙大學文學院(大韓民國)中，薦送願意認真學習對方語言與文化的學生。
- 第二條 交換留學生限雙方組織中在學的大學部學生或研究生。
- 第三條 交換留學生人數原則上以二名為限，交換期間以一年(兩學期)為基準。但，交換留學生在對方學校僅停留一學期修習課程時，一年則可派四名交換留學生。
- 第四條 根據互惠原則，對交換留學生免收交換學校之學費。但，有關住宿費、機票費、餐費、醫療保險費、書籍費、生活費等均由學生自行負責。
- 第五條 交換留學生應遵守當地法律與校規。
- 第六條 交換留學生在留學期間的成績、學分取得與否，交換學校有自主決定權。但，交換留學生在交換學校修習課程結束後，交換學校應盡速提供學生或對方學校該生留學時之修了證明或成績證明書。
- 第七條 本協議有未備或需要修改事項時，由雙方基於友好精神協商解決。
- 第八條 此協議書由雙方簽字之日起生效，學生交換在簽署之後的學期起實施，有效期為5年。5年過後，每一年自動續約。但，兩院之任一方如無續約之意思時，必須在6個月前把終止協議的通知以書面的形式通知對方。
- 第九條 本協議書用中文與韓文兩種文本作成，兩份文書皆具備正本的同等效力，雙方各執一份。

中華民國
國立高雄大學人文社會科學院
院長 白秀華

Hsiu-Hua P.—
日期：2014.1.16.

大韓民國
慶熙大學文學院
院長 金鍾福

Jong-Bok S.
日期：2013.12.11.



대한민국 경희대학교 문과대학
중화민국 국립고웅대학 인문사회과학원
학생교류협정서



대한민국 경희대학교 (慶熙大學校) 문과대학과 중화민국의 국립고웅대학 (國立高雄大學) 인문사회과학원은 양측의 우호와 학술교류 증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학생을 교환하는데 합의하며 아래의 조문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1. 경희대학교 문과대학(대한민국)과 국립고웅대학 인문사회과학원(중화민국)은 교환 유학생으로 상대국의 언어와 문화를 성실히 익히고자 하는 학생을 추천하여 보낸다.
2. 교환유학생은 양교에 재학중인 학부학생 또는 대학원생으로 제한한다.
3. 교환 유학생 수는 1년 (두학기) 기준 2명, 교환유학생이 한학기만 상대국에서 수학할 경우 1년에 4명 까지 파견할 수 있다.
4. 교환유학생에 대해서는 호혜원칙에 따라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측에서 학비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학비외의 기숙사비, 항공료, 식비, 의료보험료, 서적구입비, 생활비 등은 학생이 자비로 부담한다.
5. 교환유학생은 현지의 법률과 규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6. 양교는 자교에 유학 온 교환학생이 유학기간 중 취득한 학점 및 성적을 상대방 대학에 수료증명서나 성적증명서의 방식으로 신속히 서면 통보한다.
단, 교환유학 기간 중 취득한 학점 및 성적의 최종적인 환산 및 인정은 유학국 대학이 아닌 학생이 속한 원대학의 결정에 따른다.
7. 본 협정서의 미비점이나 수정사항이 있을 시 우호와 호혜 정신을 기반으로 서로 논의하여 해결한다.
8. 본 협정서는 양측이 서명한 날로 효력이 발생하며 학생교환은 서명 직후 학기부터 실시한다. 본 협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5년 후 매년 자동으로 협정이 연장된다. 그러나 양교 중 어느 한 측이 협정을 연장할 의사가 없을 시 종료 6개월 전에 협정종료 통지를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 본 협정서은 한국어 및 중국어 두 개의 문서로 작성하여 양측이 각각 1부씩 보관하며 두 문서는 모두 정본의 효력을 가진다.

경희대학교 문과대학

학장 김종복

날짜 : 2013.12.11.

국립고웅대학 인문사회과학원

원장 백수화

날짜 : 2014.1.16.